

자살로 고인을 떠나보낸 후 유족의 일반적인 반응

사별 직후 ~ 3개월

사별 후 충격과 혼란으로 불안과 초조하게 됩니다.

- 혼란과 놀람, 믿을 수 없음
- 눈물과 식욕 상실, 잠을 자기 힘듦
- 외부활동 중단, 고인에 대한 생각의 집착

사별 3개월 ~ 3년까지

고인의 죽음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부정합니다.

- 갈등, 감정조절의 어려움
- 우울, 죄책감, 수치심
- 과민함, 반복되는 고인의 회상

사별 3년 이후

고인의 떠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찾게 됩니다.

- 책임감, 새로운 삶 개척
- 에너지가 생기고 안정감 찾음
- 기념일에도 잘 견디며, 필요시 도움을 구함

#. 애도 시간은 유족의 심리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자살유족을 위한 홈페이지 '따뜻한작별'

- 따뜻한작별 : www.warmdays.co.kr

*검색창에 '따뜻한작별'을 검색해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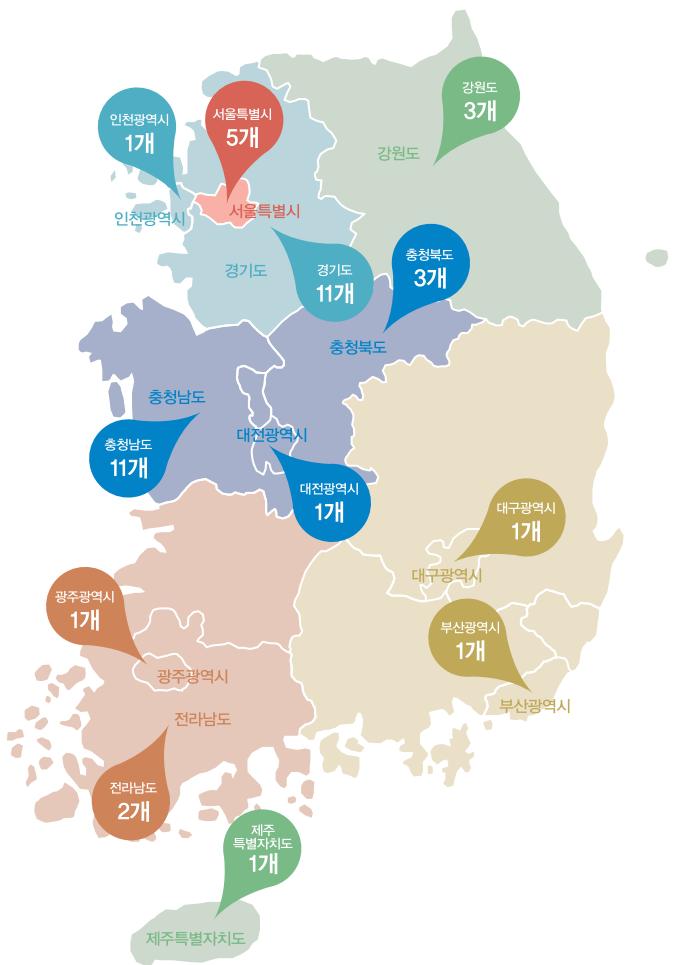
- 온라인 추모공간, 사망 후 행정처리 절차/복지·지원서비스 안내, 자조모임, 정신건강 정보 안내

- 따뜻한작별 문자서비스

· 유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, 전문 정보 등
문자발송 서비스

전국 자살유족 자조모임 안내

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
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.



* 자조모임은 '따뜻한작별' 홈페이지에 상시 업데이트 중입니다.
우리지역의 자조모임은 '따뜻한작별' 홈페이지(www.warmdays.co.kr)
또는 중앙심리부검센터(T.02-555-1095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4시간 상담전화 | 자살예방상담전화 ☎ 1393
정신건강위기상담 ☎ 1577-0199

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이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

따뜻한
작별

유족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·지원서비스

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

고인이 떠난 후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경우

지원대상

-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, 부양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지원내용

-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장제급여 등 지원

신청 및 문의처

-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
긴급복지 지원제도

고인이 떠난 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을 경우

지원대상

-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 사유와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
신청 및 문의처

- 시·군·구청/읍·면·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
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

고인이 떠난 후 자녀 양육·돌봄이 어려운 경우

지원대상

-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, 부양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지원내용

-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장제급여 등 지원

신청 및 문의처

-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
기타 신고 및 등록

고인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할 경우

: 국세청 ☎126

고인의 영업자 지위 승계 등록을 원할 경우

: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 ☎110

고인의 각종 거래계약 변경/해지/중단 신청을 원할 경우

: 해당 카드사 문의

사별 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

장례진행

- 사망진단서 발급 및 매장/화장신고서 작성
- 매장지/화장지 결정 후 장례 진행
- 문의: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
사망신고

- 시·군·구청, 읍·면사무소, 주민자치센터 신고
-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
- 문의: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
재산상속

- 안심 상속 서비스(www.gov.kr)을 통해 조회 및 신청
- 기간 내 절차 진행

구 분	시 기
소유권 이전등기	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
한정승인/포기청구	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
상속세 신고납부	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
취득세/등록세 신고납부	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
자동차 상속이전 등록	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

보험금 청구

-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유족이 일반사망 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모두 지급하도록 하였으나, 2016년 9월에는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 재해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

: 문의: 국민연금공단 ☎1355 (www.nps.or.kr)

: 금융민원센터 ☎1332 (www.fcsc.kr)

: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

유족 지원 서비스

유족

지역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
문의 1577-0199 / 1393

초기 심층 상담

자살 유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(선택)

치료비 지원

심리부검

애도상담

유족모임

자살유족 치료비 지원

지원대상

- 자살유족
동거 및 비동거한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
동거한 조부모, 며느리, 손주 등 사촌 이내 친척

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
자살예방센터장 추천을 받아 신청

→ 중앙심리부검센터
승인 후 지원

지원내용

-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, 심리검사비, 심리상담비(개인/집단), 치료프로그램비(*중복지원가능)

지원금액

- 인당 140만원(필요에 따라 최대 300만원 지원)

심리부검면담

-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인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
- 자살로 인한 또 다른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

지원대상

- 고인과 유족이 모두 성인이며 사별 후 3개월 이상 3년이내인 직계 가족

신청 및 문의처

- 중앙심리부검센터 대표번호 ☎02-555-1095

정신건강서비스

애도상담

- 거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전문적인 1:1 상담 가능

자조모임

-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살 유족 모임 참여